

하남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940
----------	------

제출연월일 : 2019.10.

발의자 : 김낙주 의원

1. 제정이유

-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확산과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남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나. 시장 및 시민, 사업주의 책무 (안 제3조~제5조)
- 다. 시행계획의 수립 등 및 계획수립 등의 협조 (안 제6조~제7조)
- 라.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및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안 제8조~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가. 입법예고기간 : 2019년 10월 28일 ~ 11월 7일(10일)

나. 의견 내용 : 의견없음

8. 부서협의 결과

9. 참고사항 : 덧붙임 (전국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

10. 관련부서 : 복지문화국 여성보육과

하남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일과 가족의 양립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 평등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친화 사회 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며, 건강한 가정이 조성되도록 하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2.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노동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3. “가족친화제도“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 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 나.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 다.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 라.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로그램 등
 - 마. 가족관계 증진제도 : 자녀 방학 중 휴가제, 근로자 가족 초청행사, 정시 퇴근제, 육아데이, 가정의 날, 부모님 직장체험 등 운영 지원
 - 바.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 : 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
 - 사.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 : 한 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새터민 가족, 독거노인, 장애인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제도
4. “가족친화기업”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가족친화적 경영목표를 지속적으로 구현하는 기업을 말한다.

5. “가족친화 마을환경“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 환경을 말한다.

6. “직장맘“이란 자녀를 임신·출산·양육하면서 일과 가족생활을 병행하는 여성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양성평등하고 건강한 가족친화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하남시가 시행하는 가족친화 사회 환경조성 촉진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 및 확대되도록 근무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직장근무 위험요인을 제거하며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에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 환경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족친화 사회 환경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가족친화 제도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가족 돌봄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가족친화 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가족친화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계획수립 등의 협조)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 환경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① 시장은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족친화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2.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3. 직장 내 가족친화 교육 실시 및 강사양성
4.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6. 가족친화제도 우수사업장에 대한 사례 발굴 및 홍보
7.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 도입과 경영 성과의 연계에 관한 자문
8. 그 밖에 시장이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

제9조(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등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0조(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① 시장은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마을 모델의 개발·보급
2. 가족친화 시설 조성 지원
3.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발·지원
4. 마을환경의 가족 친화적 요소에 대한 평가
5.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안에서 가족친화 마을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2.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3. “가족친화제도”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 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 나.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 다.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 라.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로그램 등
 - 마.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제도
4. “가족친화 마을환경”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운영에 있어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2. 2. 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2. 2. 1.>

제7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2. 2. 1.>

제11조(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2. 2. 1.>

1. 가족친화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2.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3. 직장 내 가족친화 교육 실시 및 강사양성
4.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6. 그 밖에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2조(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2. 2. 1.>

1. 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등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3조(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2. 2. 1.>

1. 가족친화 마을 모델의 개발·보급
2. 가족친화 시설 조성 지원
3.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발·지원
4. 마을환경의 가족친화적 요소에 대한 평가
5.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안에서 가족친화 마을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제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연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5.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가족친화제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제도”란 다음 각 호의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0. 3. 19.>

1. 가족관계 증진제도 : 자녀 방학 중 휴가제, 근로자가족 초청행사, 정시퇴근제, 육아데이, 가정의 날 등 운영 지원
2.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 : 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
3.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祖孫家族),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장애인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제도

제5조(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지원사업)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3. 19.>

1. 가족친화제도 우수사업장에 대한 사례 발굴 및 홍보
2.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 도입과 경영 성과의 연계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 마.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붙임

타 자치단체 조례 등 제정현황

구분	자치단체명	조례(규정) 명	제·개정일자	관련부서
조례	경기도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2019-07-01	가족다문화과
조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6-05-19	여성정책과
조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2-10-15	여성가족 정책관
조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2017-12-27	여성가족 정책과
규칙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18-02-28	여성가족 정책과
조례	대구 달성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03-30	복지정책과
조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5-12-31	성인지 정책담당관
조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3-06-05	여성가족 청소년과
조례	충청남도	충청남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2019-02-20	여성가족 정책관
조례	충남 보령시	보령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12-20	사회복지과
조례	충남 천안시	천안시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및 지원 조례	2018-03-21	여성가족과
조례	충북 증평군	증평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6-12-23	사회복지과
조례	경상북도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2019-05-30	여성가족 정책관
조례	전라남도	전라남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09-28	여성가족 정책관
조례	전남 광양시	광양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5-09-23	사회복지과
조례	전라북도	전라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5-07-03	여성청소년과
조례	전북 완주군	완주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6-09-29	교육아동 복지과
조례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03-29	여성가족 청소년과